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8. 4.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민방위교육장 사용료중 강당을 사용할 경우 4시간을 기본시간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어, 2시간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2시간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모순이 있음
- 그러므로 강당사용의 최소 기준시간 및 기본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초과사용료의 일부 및 청소비를 조정하는 등 사용료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9조와 관련된 별표1의 교육장 사용료 중 기준시간 및 사용료의 일부 조정
 - 강당사용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 강당 1일 기본사용료를 「300천원」에서 「250천원」
 - 오전 4시간 「100천원」에서 2시간 「50천원」
 - 오후 4시간 「120천원」에서 2시간 「60천원」
 - 야간 4시간 「150천원」에서 2시간 「70천원」
 - 강당 초과 사용시 시간당 「20%」가산을 「20천원」으로 변경 조정하면서 야간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30천원」을 가산

- 냉·난방 「1시간 기준 50천원」을 「2시간 기준 100천원」으로 조정
- 청소 1회 기본사용료 60천원을 삭제
- 교육장 사용기준의 오후시간을 「14:00~18:00」에서 「13:00~18:00」로 조정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

1. 교육장 사용료

시 설 명	사 용 기 준	기준시간	기본사용료	적 요
강 당 (내빈실 포함)	1일(09:00~22:00)		250,000원	○ 초과 사용료 가산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 야간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원 가산 ○ 최소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오 전(09:00~13:00)	2시간	50,000원	
	오 후(13:00~18:00)	2시간	60,000원	
	야간(18:00~22:00)	2시간	70,000원	
냉·난방 (강당및 내빈실)	냉난방 2시간 기준		100,000원	○ 시간초과 시 50%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 향	녹 음 료	1 회	5,000 원	○ 1회란 행사 1회를 뜻한다
조 명	종합(무대) 조명	1 회	20,000 원	
영 상	빔 프로젝트	1 회	20,000 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1]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 1. 교육장 사용료				[별표 1]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 1. 교육장 사용료				
시 설 명	사 용 기 준	기본사용료	적 요	시 설 명	사 용 기 준	기준시간	기본사용료	적 요
강 당 (내빈실 포함)	1일(09:00 ~22:00)	<u>300,000원</u>	○ 초과 사용료 가산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20% 가산하며, 최소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강 당 (내빈실 포함)	1일(09:00 ~22:00)		<u>250,000원</u>	○ 초과 사용료 가산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u>20,000원</u> 가산 - 야간시간 초과시 시간당 <u>30,000원</u> 가산 ○ 최소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오 전(09:00 ~13:00)	<u>100,000원</u>			오 전(09:00 ~13:00)	<u>2시간</u>	<u>50,000원</u>	
	오 후(14:00 ~18:00)	<u>120,000원</u>			오 후(13:00 ~18:00)	<u>2시간</u>	<u>60,000원</u>	
	야간(18:00 ~22:00)	<u>150,000원</u>			야간(18:00 ~22:00)	<u>2시간</u>	<u>70,000원</u>	
냉 · 난방 (강당및 내빈실)	냉난방 <u>1시간</u> 기준	<u>50,000원</u>	○ 시간초과 시 50% 가산	냉 · 난방 (강당및 내빈실)	냉난방 <u>2시간</u> 기준		<u>100,000원</u>	○ 시간초과 시 50% 가산
청 소	<u>1</u> 회	<u>60,000원</u>	○ 대강당, 로비, 내빈실, 화장실	〈삭 제〉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교육장은 구미시 사곡동 434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장 시설”이라 함은 교육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교육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음향, 영상장비, 광고물의 게시,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교육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 교육장의 사용범위는 교육장 시설에 한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변경·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신청의 내용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기준) ① 교육장의 사용시간은 주간은 09:00~18:00, 야간은 18:00~22: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
3.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 시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행사 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일 3일 전까지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자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 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육장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교육장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에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시장은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 방 위 교 육 장 사 용 신 청 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임장에정인원	
	행 사 명			
	설 비 내 용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월 일(일간)		
		시 ~ 시(시간)		
	사 용 요 금	원		
첨 부	1. 행사 계획서(시나리오) 2. 특별 부대설비 시설 허가신청서 3. 행사 보험 증서			
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전화 :) 성 명 :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 방 위 교 육 장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행 사 명				
허 가 일 시	년 월 일 ~ 월 일(일간)			
	시 ~ 시(시간)			
사 용 료	사 용 요 금			
	사용료내역			
기 타 사 항				
준수사항	1.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교육장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교육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교육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구미시 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행사 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민 방 위 교 육 장 사 용 불 허 가 통 지 서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행 사 명			
	사 용 일 시			
불 허 가 사 유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민방위교육장 특별 부대설비 시설 허가신청서			
주 소			
단 체 명		성 명(대 표 자)	
전 화 번 호		허 가 번 호	
시 설 내 용 및 설 치 사 유			
시 설 기 간		원상복구 일시	년 월 일까지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기에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민방위교육장사용변경소신청서			
주 소			
단 체 명		허 가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전 화 번 호	
행 사 명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월 일(일간)		
	시 ~ 시(시간)		
변경내용	당 초		
	변경사항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취소)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 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전 화 번 호	
행 사 명			
사 용 감 면 사 유			
업 무 주 관 부 서		부서장 성명	(인)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월 일(일간)		
	시 ~ 시(시간)		
기 타			
첨 부	행 사 계 획 서 1부		
위와 같이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기관) : 성 명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표 1]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시설 사용료

1. 교육장 사용료

시 설 명	사 용 기 준	기준시간	기본사용료	적 요
강 당 (내빈실 포함)	1일(09:00 ~22:00)		250,000원	○ 초과 사용료 가산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 - 야간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원 가산 ○ 최소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오전(09:00 ~13:00)	2시간	50,000원	
	오후(13:00 ~18:00)	2시간	60,000원	
	야간(18:00 ~22:00)	2시간	70,000원	
냉·난방 (강당및 내빈실)	냉난방 2시간 기준		100,000원	○ 시간초과 시 50% 가산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 향	녹 음 료	1 회	5,000 원	○ 1회란 행사 1회를 뜻한다
조 명	종합(무대) 조명	1 회	20,000 원	
영 상	빔 프로젝트	1 회	20,000 원	